

## 사직단 정문 실측조사

- 국토의 신, 주곡의 신에게 제사하는 사단과 직단으로 구성.
- 정문은 보문 제177호, 사직단은 사적 제121호로 지정·관리 중.
- 사직단 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한 평삼문.
- 1961년 12월 1일 도시계획 의한 도로확장으로 해체, 1962년 12월 24일 14m 후퇴(당시 공사비 56만원).
- 중국의 「일주서」 작낙에 사단제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5방을 대표하는 색의 흙을 축단 위에 깔아, 5방을 구비한 국토를 상징하였다고 함. 이러한 사직이 도성계획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정착된 시기는 중국 주나라 때로 보고 있음.
- 유는 단과 미랄(墟塚-낮은 담장)을 말함.
- 국토와 오곡은 국가와 민생의 근본이 되므로 고대에는 나라에서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고 보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사직을 설치하고 제사를 드렸음.
- 태조 2년 2월 10일, 신도(新都)의 종묘, 사직 등의 형세지도를 만들었음.
- 태조 2년 11월 2일, 도평의사사와 서운관의 관원들과 함께 종묘·사직의 터를 잡고 공작국을 열었음.
- 종묘는 경복궁 동쪽의 연화방에, 사직은 서쪽의 인달방에 위치를 정함.
- 태조는 4년 정월, 사직단 영건공사를 시작, 2월에 왕이 친히 서봉으로 나아가 사직단 축조공사 현장 살핌.
- 중춘, 중추, 납일 대향사에는 국가와 민생 안정을 기원하고, 정월에 기곡제, 가뭄 때 기우제를 각각 행함.
- 태종 6년(1406) 6월, 왕이 직접 사직단의 개수를 명령하고, 각 고을에도 사직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 세종 8년(1426) 6월, 사직서를 설치하여 사직단을 관리하도록 함.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함께 피신시켰음. 이 당시 사직단과 종묘는 파괴되었음.
- 선조 25년(1592) 4월, 임진왜란으로 신주가 서북방을 순행함, 5월에 송도에 이르자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목청전 안에 안치하였다가 6월 목청전에 모신 사직 신주를 왕세자(광해군) 일행이 모시고 해주의 행재소에 임시 봉안하였음. 이듬해 한양이 수복되자 사직신주를 세자가 모셔왔으나 신실이 소실되고 없어 정릉동 심연원의 집에 신위를 임시 봉안하였다가 선조 27년(1594) 신실을 영건하여 신주를 재봉안.
- 정유재란으로 다시 행해도 수안으로 이안되었다가 선조 30년(1597) 10월 신실의 영건과 함께 다시 재봉안.
- 병자호란으로 사직 신주를 강화도로 잠시 옮겼다가 인조 15년(1637) 1월 29일에 옮겨왔음.
- 일제강점기 당시 사직단 제사의 폐지를 가져왔고, 1911년 2월에는 사직서의 건물과 사직단 일대의 부지가 조선총독부로 넘어갔음. 1922년 10월에는 경성부에서 종래의 사직단 일원의 15,179평과 인접지의 임야를 포함한 66,619평을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계 받아 공원화 작업에 들어갔음.
-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전락시켜 왕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일반 백성도 왕 소유의 토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중세적 의식체계의 변혁을 시도하고자 한 일제의 주된 식민화 수단으로 이용됨.

### ※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 공원(1937년 3월말 기준)

- ~ 남산공원 : 신사, 명소, 경승지, 1897년 3월 개원, 11.54ha, 원로/기념비/음악당/조명
- ~ 파고다공원 : 명소, 경승지, 1898년 개원, 1.14ha, 아동유원/음악당/탑
- ~ 장충단공원 : 왕실토지, 1919년 8월 6일 개원, 20.84ha, 비원로/운동장/야구장/아동유원
- ~ 사직단공원 : 왕실토지, 1922년 10월 개원, 15.92ha, 등원로, 광장, 단
- ~ 효창공원 : 왕실토지, 1924년 6월 개원, 1924년 6월, 22.81ha, 회유도로/광장/조명설비 등

- 사직단공원사무실 위쪽에는 1988년 복원정비 이전에 어린이수영장으로 사용되던 곳, 현재는 어린이놀이터로 용도 변경되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일곽에는 화장실과 창고가 있음.
- 사직단 광장의 이울곡선생 동상과 신사임당 동상은 원래 주원의 동주문에서 사직단 광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주원 유구 좌우에 있던 것을 제일수영장을 철거하고, 정비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여 정비함. 신사임당 동상과 이울곡선생 동상이 나란히 배치하였으며, 이울곡선생 동상보다 신사임당 동상 둘레를 크게 확장하여 화강석으로 기단을 만들고, 이울곡선생 동상과 화강석 보도블럭으로 연결됨. 광장의 좌측으로 간이매점이 있으며, 그 아래로 내려오면, 전통한식건축방식의 공중화장실이 사직단의 주원과 나란히 놓여져 있음.

- 사직단 정문은 1939년 10월 18일 보물로 지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고적도보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약간 차이를 보임. 판장문과 찌그러진 심방목, 문설주 등을 교정하거나 새로 만들었으며, 내림마루와 용마루도 정정하였음. 1970년대에 사직공원 일대의 조경사업으로 또 한 차례의 새 단장하였음.
- 기타 유원 내 시설물 중에 예감(瘞坎)이 있는데, 대향을 지낸 뒤 재물을 땅에 묻는 예식에 따른 만들어진 것으로 각 단별로 따로 설치되어 있음. 예감은 한 변이 1m 정도 되며, 폭 20cm 정도의 장대석 4개로 짜여진 것. 깊이는 60cm 정도 됨. 그 위에 뚜껑을 달았던 철물장식이 남아 있음.
- 동상 건립으로 인해 서담이 모두 멸실된 것으로 보았음. 문 내측의 구성재 등도 광장 조성으로 훼손되어 소실되었고, 홍살문과 초석과 그 밑의 장대석 그리고 외측으로 일단의 계단석만 남아 있음.

## 지방 사직단에 대한 연구 -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 김미영

- 태조 4년 정월에 착공되었고 준공과 동시에 사직서가 그 임무를 시작하였다. 태종 14년에는 담장의 제도를 정하였고 세종 14년에는 복문 담장 안에 신실을 따로 만들었다.

## 조선시대 단묘건축 정문 문비에 대한 연구 / 이동범, 한동수

- 정문은 권역 내 출입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권역의 위상에 따라 상징적 체계 아래 건립되었다.
- 현재 종묘 정문에는 기둥하부를 가로지르는 문하방이 없다. 3칸 모두 기둥 좌우면에 부설된 문선 하부를 살펴보면 문하방 부위에 횡부재가 설치되었던 흔적이 여실히 남아 있다. 또한 문비 하부에 문하방이 지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측컨대 관리상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어느 시점에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종묘 외곽담장에 긴급 상황에 대비한 차량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거된 문하방을 재설치하여 문비의 처짐 등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직단 정문은 1962년 도시계획선에 접촉되어 14m 후방으로 이축할 때 현판을 새로 다는 등 정비를 했다. 즉 이 때 달아난 판비와 찌그러진 심방목, 문설주 등을 교정하거나 새로 만들었으며, 옥개의 물매 곡선도 정정하였다. 그러나 이축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방치된 결과 정문의 피해가 막심한 것을 1970년대에 사직공원 일대의 조경 사업으로 또 한 차례 새 단장을 하였다. 지하철 3호선이 정문 바로 앞에 가설됨으로써 공사 시 정문은 다소간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 사직단 정문을 뒤로 10m 후퇴하여 재설치하였다. : 경향신문, 1973년 9월 25일
-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의 모습처럼 홍살널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홍살널문 상단부에는 정면부가 넓고 전후면이 좁은 장방형 단면의 홍살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단은 높이가 낮은 판이 설치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세로 방향으로 긴 널재가 설치되어 있다. 가새설치는 첫째, 널재의 건조수축에 의한 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보강 목적으로 설치했을 경우, 둘째, 구조보강이 아닌 단묘건축 정문의 문비를 표현함에 있어 당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셋째는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조선시대 국가전례에서 사직제 의례의 분류별 변화와 의주의 특징 / 박례경

- 天神에 대한 것은 祀, 地祇에 대한 것은 禋祭, 人鬼에 대한 것은 享, 文宣王에 대한 것은 釋奠이라 부른다고 附記하였다.
- 춘관통고에서 사직의 사전 체계는 주현의 사직제 또한 소사에 편입시키고 기고의 친제를 대사에 편입시켜서, 기우제나 기곡제뿐만 아니라 주현의 사직제와 기고제까지 모든 사직제를 대사, 중사, 소사의 정사로 편제했음을 알 수 있다.

- 조선시대 사직제는 기고의 기능적 범주가 점차 기곡, 기우의 농경과 민생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대되어 가고 비정기적이거나 변사 체계 안에 명시되지 않던 제사들까지 점차 대·중·소사의 정사 체계로 재편되어 갔다. 이는 민생에 절실한 신구들이 모두 사직제의 부수적인 기능을 넘어서 본질적인 역할로 자리 잡아갔음을 의미한다.
- 주현에서도 동일한 흐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예치의 전국적인 기틀을 다져갈 수 있었다. 주현의 춘추 제사를 소사의 정사로 편입하고, 지방의 주·현에 홍수, 한발, 질병 병충해, 전쟁이 있거나 책봉, 관례, 혼례 등이 있을 때 주·현의 사직단에서 신구하고 기고하는 기고제를 주현에서도 실행하는 과정은, 경중에서 요구되는 예제의 변화를 지방에서도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중앙의 지배를 확대하는 것이다.
-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민생과 직결된 기능들이 점차 확대되고 주현으로도 확장됨으로써 사직제는 위상이 최대로 제고되었다.
- 국조오례의가 제후의 예제를 준용하면서 신위의 명칭이 대사, 대직에서 국사, 국직으로 바뀌었고, 의주에서 왕의 취위와 복위 시에 헌가의 봉안지악을 연주하는 의식과 아헌, 종헌의 헌가 연주시에 향악을 교주하는 의식이 없어졌다. 이러한 의식절차는 대한제국시기에는 왕을 황제로 칭하고 황제의 예제를 표방하면서 국사·국직이 다시 태사·태직으로 바뀌게 되지만, 세부적인 의식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 조선시대 사직제 의례의 정비과정은 민생에 절실한 신구들을 사직제 의례의 본질적인 역할로 흡수함으로써 제도의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는 실행 주체들의 자각적 노력을 담고 있다.

## 고구려의 사직제사 / 조우연

- 선사시대에는 원시적 토지숭배와 농경신앙 및 조상숭배관념이 결합된 종교적 상징물이었으나, 역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영토에 대한 정치적 상징으로 변모된다.

## 조선시대 후기 기곡제 실행의 의미 - 장서각 소장 사직서의궤와 실록을 중심으로 / 이 욱

-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사직단에서 기곡제가 다시 거행된다. 1683년(숙종 9년)에 섭행으로 시작한 기곡제는 1694년(숙종 20년)에 이르러 친행기곡제가 거행되고, 영·정조대를 거치면서 국가사전의 대사로 정식화되었다.
- 기곡제가 국가대사로 자리한 것은 첫째, 조선후기 장기간 지속된 재난에 따른 고통과 이로 인한 장래의 불안이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절박한 동기였으며, 기존의 사전에 갖추어진 의례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둘째, 조선전기 기곡제가 폐지도니 이후 연초에 지냈던 선농제에 기곡의 의미가 첨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에 대한 기곡제를 새로 실행하였던 것은, 선농제를 강조한 남인에 대한 서인의 대립과 선농제가 지닌 축제적 성격을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곡제가 가진 정치적 의미에 의해서 중요시되었다. 이것은 사직 자체가 가진 정치적 성격 이외에도 기곡제가 '천자의 의례'였다는 데에서 제왕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정조의 의도가 맞았기 때문이었다.

## 바람 메고 떠나는 답사여행 / 역사문화연구회

- 마지막으로 황색의 흙으로 덮는데, 이 황색 흙은 왕을 의미한다. 왕이 이 나라의 중심이자 하늘로 사방의 모든 땅과 그 땅위의 모든 것을 덮고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토지와 땅위의 백성들은 왕의 품안에 있다는 의미이다.
- 1924년 조선총독부가 사직단을 공원으로 만들었으며 1940년 3월 총독부고시 제208호, 경성시가지계획공원 제35호에 따라 정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했다.
- 단군성전은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을 모신 사당이다. 원래 그 자리에는 사직단의 터로써 일제가 절을 지었다고 한다. 60년대 사직단을 복구하면서 그곳에 현재 단군 성전이 지어진 것이다.

## 조선시대 종묘와 사직의 구성관념에 관한 연구 / 김영모, 임의제

- 류본예의 한경지락에서도 대동소이하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 성안 서부 인달방에 있다. 서는 동쪽에 있고, 직은 서쪽에 있다. 두 단은 모두 사방이 25척이며, 높이는 3척이고 사방에 승강구를 3층씩 두었다. 단의 장식은 방위의 빛을 따라 동은 푸른빛, 남은 붉은 빛, 서는 흰빛, 북은 검은 빛이며, 위는 황토를 덮었다. 사에는 석주가 있다. 길이가 2척5촌이며 사방 1척이다. 위는 둥글게 깔고 밑은 반쯤 묻어서 단 남편 층계 뒤에 세웠다.*

## 조선후기 사직의 특별 제사, 기곡제 / 강문식

- 조선시대에 사직단을 관정하던 관청이 사직서이다. 사직제사는 오례의 길례 중에서 대사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선시대 종묘 제사와 함께 가장 격이 높은 제사였다.
- 정기적인 제사로는 매년 2월에 시행되는 춘향대제와 8월에 거행하는 추향대제, 그리고 12월에 실시하는 납향대제가 있다. 부정기적인 제사로는 국가의 중대사를 사직신에게 고하는 각종 고유제, 가뭄이 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지내는 기우제, 기청제 등이 있다. 여기에 17세기 후반 숙종대에 이르러 새로운 제사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곡제이다.
- 사직에서 기곡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683년(숙종 9년)이다.
- 사직 기곡제 시행이 확정되어 1월 28일에 처음으로 사직에서 기곡제가 거행되었다. 이후 숙종대에는 1696년(숙종 22년)과 1701년(숙종 27년)의 사직 기곡제, 1705년(숙종 31년)의 선농단 기곡제 등 세 차례 더 시행되었다.
- 영조대에는 숙종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곡제가 시행되었다. 영조대에는 9차례의 친행과 1차례의 섭행 등 모두 10회의 기곡제가 시행되었다.
- 1732년(영조 8년) 12월 영조는 다음해 1월에 기곡제를 시행하도록 명하면서 ‘농사는 국가의 근본이니 비록 풍년이 들었을 때라도 백성을 위해 기곡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하였다.
- 기곡제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백성을 위한 풍년 기원과 권농이다.
- 숙종~영조대를 거치면서 사직 제사의 하나로 시행된 기곡제는 정조대에 이르러 춘향, 추향, 납향대제와 함께 사직에서 매년 시행되는 정기 제사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 정조는 재위 24년 동안 20차례 기곡제를 실시했고, 그중 17회를 정조 자신이 직접 주관하는 친행으로 거행했다.
- 기곡제는 『예기』 「월령」이나 『춘추좌씨전』 기록에서 보듯 제사의 대상이 상제, 즉 하늘이다. 전통시대의 하늘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후국인 조선의 국왕이 하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명분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숙종대 김수흥이나 송시열이 기곡제 시행을 주장할 때, 이들 역시 이 제도가 원칙적으로는 조선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풍년을 기원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곡제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하늘 제사의 의미보다 풍년 기원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 실질적으로는 ‘하늘 제사’를 직접 주재할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을 가진 군주임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왕권의 강화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 정조는 윤음에서 사직 기곡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농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다음, 감사·수령들이 자신의 뜻을 체득하여 권농에 힘써서 백성들이 실농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정조는 기곡제를 주관하기 위해 궁 밖으로 나오는 때를 도성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로 이용하였다.

## 조선 태종·세종대 사직제의 이해와 운영 / 한형주

- 태종 6년 원단과 사직단 등의 관원을 수리하면서 이를 간수할 수복인정이 차정되었고, 이해 가을 사직단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작된 공사는 다음해 여름의 한발과 동원한 승도의 문제로 말뼉이었다.

- 태조 6년 예조에서는 『홍무예제』에 의거해 명도 명과에 사직을 지어 춘추에 행제하도록 했고, 13년에는 과거에 사직제에서는 소와 돼지의 희생만 썼는데, 이제는 종묘와 같이 양도 쓰도록 했으며, 이어 사직단 이하 제소의 신주, 창고, 재소(재계하는 곳)들을 고쳤다. 사직 주장의 제도를 송조 의례국 의례신의를 의해 제정하였고, 사직단에 별도의 재실을 영조하였다.
- 세종 4년 5월 태종이 죽자 예조는 졸곡까지 사직을 제외한 제사를 정지한다고 보고하는데, 이에 따라 이해 8월 사직에서 추향대제가 거행되었다. 그런데 이때 치재시 복색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즉 이전의 국상에서는 일단 상복을 벗고 길복으로 치재를 시행했다가 산재시 다시 상복을 입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길복과 상복을 번갈아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논의 끝에 아예 서계 이후 제사의 전 과정 동안 계속 길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하였던 것이다.
- 국상중의 사직제가 평시와 같을 수가 없어 일정한 변용이 이루어졌다. 즉 사직제의 향축을 전달할 때 왕은 평시의 공복이 아닌 상복과 흑대를 착용했고, 헌관 이하도 같은 복장을 했던 것이다. 이 상황은 졸곡 후에 바뀌어 대사의 재계시 헌관들은 상복이 아닌 공복을 입었고, 세종 역시 길복 차림으로 향축을 전달하였다.
- 국상 중의 운영으로 시작된 사직제의 연구는 사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직서의 설치로 이어졌다. 세종 8년 이조의 청에 의해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사직단을 사직서로 승격시켜 종7품의 1인과 단직 2인을 두었고, 곧이어 전생서의 2인을 감안하여 사직서에 재정시켰다. 이후 문종대에는 제조서와 제조를 각각 1인씩 두되, 도제조는 좌의정이 맡도록 하였고, 세조대의 관제 개혁시에는 종5품의 서령 1인을 돕으로서 사직서는 종5품 관서로 승격되었다. 이후 이 상황은 그대로 준용되어 경국대전에는 사직서의 임무가 규정되었고, 관원으로는 비상임의 도제조, 제조 각 1인과 전관임긴 령 1인(종5품), 참봉 2인(종9품)으로 구성되었다.
- 사직은 원래 사에만 석주가 있어 신좌에 비견했을 뿐이며, 신의 신위가 없었는데, 홍무예제에서는 중앙보다 등급을 낮추고자 동단인 사·직의 가운데 석주를 놓아 두 신의 신주로 삼고, 위패를 각각 설치하는 변통을 시행했다. 따라서 사단과 직단을 별도로 설치한 조선에서는 석주를 사·직의 중간에 두고 정제를 해야 하는데, 사·직의 동쪽에 후토를 서쪽에 후직을 둬으로써 정위와 배위가 서로 마주보는, 즉 저위가 배위에게 굴한 형상을 이루어 부당하니 고제에 따라 사·직신은 남쪽 중앙에서 북향하고, 후토와 후직신은 서쪽 중앙에서 동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초의 의견에 대한 가부는 기록이 없는데, 그러나 며칠 뒤 예조가 보고한 사직섭행의주에는 그의 의견이 수용되었고, 이후 국조오례의에도 그대로 게재되었다.
- 세종 14년 단유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주자설에 따라 주척을 기준으로 했더니 그 규모가 작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를 영조적으로 바꾸어 시행하니 주척보다 1.5배의 크기로 증가하게 되었다.
- 사직은 위치가 사전에 등재된 제신 중 최고로서 국상 중에도 제사가 시행되는 유일한 존재였다.
- 조선은 기본적으로 대명 관계상 제후국을 자처했기에 사직단의 크기는 ‘천자국의 반감’이라는 원칙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단유의 제작은 외견한 제후의 격에 맞추었지만 실제로는 주척이 아닌 영조적으로 계산하여 그 크기를 1.5배 정도 늘렸고, 의주도 원래 천자국은 대퇴를, 제후국은 소퇴를 사용해야 했으나 조선에서는 대퇴를 사용하는 등 형식상 제후국 입장을 취하였으나 실제로 천자국에 버금가는 내용이 많게 되었던 것이다.
- 태종이 유교적 원리대로 제례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음은 분명하다. 11년 9월 태종은 제향의 재계를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재계는 3일이면 족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예조참의 허조는 『開元禮』를 인용하며 대사의 재계는 7일이라면 반대하자 태종은 예는 성경이 중요하며 예가 번거로우면 나태해진다고 이를 반박하였다.

## 조선초기 사직 친제의례의 정비와 그 의미 / 박경지

- 천자와 제후는 영토를 중앙집권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안의 만물에 위계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였다.
- 여러 제사 참여자들이 입장하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초헌관인 왕이 사직단 북쪽의 자리로 입장한 다음, 예모혈로 사직신에 대한 제사 절차를 시작하였다. 예모혈은 희생의 털과 피를 받아 두었다가, 제사 참여자들이 입장한 뒤 제단 북쪽의 구동이인 예감에 털과 피를 넣는 것을 말한다.

- 국초에 처음 한양 정도한 뒤에 세운 사직단은 사단과 직단이 두 개의 별도의 단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 **흥무예제에 따라 태종연간에 하나의 단으로 합쳐졌으며**, 허조는 이 사직동단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의주를 작성했다. 이것인 세종실록 오례친제사직의주 및 제사직섭사의주였다. 세종 14년엔 이르러 사직단을 고쳐 쌓으면서 사직 별단 상태의 의주가 요구되었으므로 섭사의주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단 친제는 행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의주를 만들지 않고 있다가, **세조 원년에 왕이 사직에 친제함에 당면하여, 허조가 만들었던 친제의주를 세종 14년 섭사의주의 예에 따라 고쳤으니 이것이 세조원년의 개정친제의이다.**
- 세종실록 오례의 사직 음복례는 사직이 하나의 단으로 되어 있으므로 음복위도 한 군데만 있다. 합작례 없이 가장 높은 준소의 복주를 가지고 한 번 음복하였다. 세종 14년 양단 분리 후 제사직섭사의주를 작성하면서 음복례가 바뀌었다. 국사와 국직 준소의 복주를 가지고 와서 한 잔에 섞는 절차를 마련하고, 직단 위에 마련된 음복위에서 한 번 음복하도록 하였다.
- 왕은 국조오례의 의주를 기준으로 음복례까지 포함하여 총 7회 단을 오르내려야 하였다.
-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단 위와 아래를 오가도록 되어 있었고, 배례를 할 때에는 유문 밖 판위까지 나와야 했다.
- 조선의 사전에서 음사는 많지 않았는데, 사직은 대사이면서 음 제사이다.
- 모든 단의 승강절차에서 왕은 오로지 북쪽 계단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왕과 왕의 수행인원을 제외한 모든 제사 참여자들은 동문과 서문을 이용하였다. 특히 서쪽 방향이 강조되었다. **아헌관 이하의 헌관은 서문을 통해 유내에 들어오며, 단에 오르내릴 때도 오직 단의 서쪽 계단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왕이 북쪽에서 신주를 마주하는 것 또한 왕의 특권을 이루고 있었다.
- 배제관은 가장 먼저 입장하고, 여러 헌관들이 퇴장한 뒤에야 나갔다. 입장순서는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늦게 등장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배제관이 섭사의예는 따르지 않고 오직 왕의 친제에만 있는 것은 이들의 배제가 왕의 제사권을 구성하는 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제관이 입장한 뒤에 집사자 및 여러 제관들이 입장하고 최후로 왕이 입장하면 예의사가 왕에게 '유사의 준비가 삼가 갖추어졌으니 일을 행하시기를 청합니다'라 아뢰어 행례가 시작되었다.
- 배제관들은 왕에 의하여 의례적 시간이 설정·해제되는 것을 체험하고, 음복례와 음복연을 통하여 왕의 제사로 이 나라에 '복'이 내렸음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다.

**/ 이상 2018년 3월 3일, 김홍렬 정리 끝.**

(우리문화숨결 궁궐길라잡이 종묘14기/사직1기)

